

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- 2229호

도시관리계획[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 결정(안) 재열람공고

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970호(2020.3.26.)로 열람공고된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
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8월 26일
서울특별시 장

- 1) 구역명 :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
- 2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
 - 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신설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(남학동, 예장동, 필동1·2·3가, 목정동, 장충동2가) 일대	-	증)366,553.9	366,553.9	-

※ 세부 구역의 범위,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

- 3) 열람기간 : 2021.8.26.~9.9.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)
- 4) 열람내용 :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
- 5)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: 서울특별시 도심권사업과(☎02-2133-8495)
중구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86)
- 6) 관련도서 :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비치(게재 생략)

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- 2232호

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시송달 공고

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등록말소)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,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1년 8월 26일
서울특별시

1. 공고기간 : 2021.9.2.~2021.9.15.(14일간)

2. 처분대상 및 내용

업 체 명 (대 표 자)	업종 및 등록번호	소 재 지	처분사유	관련 법규	처분내용	처분 근거
디엠종합건설(주) (배성모)	건축공사업 01-3596	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, 비동 제9층 913호(가양동)	사업자등록(230-81-09824)폐업 폐업일자 : 2021.06.10.	법 제83조	등록말소 (2021.09.15.)	법 제83조 제12호

3.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이문서 송달일)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(처분을 행한 행정기관)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☎02)2133-8125으로 문의 바랍니다.